

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(제15조의11 관련)

1. 지정표시

가. 지정권자가 산림청장인 경우

1)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

2)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

산림청 지정 제 호 지정받은 기관명  지정일자 산림청장	산림청 지정 제 호 지정받은 기관명  지정일자 산림청장
---	--

나. 지정권자가 시·도지사인 경우

- 가목의 지정표시 중 산림청(영문명칭을 포함한다) 및 산림청장, 대한민국 정부의 로고에 관한 부분은 해당 시·도(영문명칭을 포함한다) 및 시·도지사, 해당 시·도의 로고로 변경하여 표시한다.

2. 작도법 등

가. 지정표시는 가로 45센티미터, 세로 30센티미터 크기의 도넛형으로 하고, 그 색상은 초록색으로 한다.

나. 지정표시의 도넛형의 중앙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로고(지정권자가 시·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·도의 로고를 말한다)를 사용한다.

다. 글자체는 고딕체를 기본으로 하고, 글자크기는 지정권자의 경우에는 가로·세로 3센티미터, 지정번호 및 지정받은 기관명의 경우에는 각 가로·세로 2센티미터, 그 밖의 글자는 각 가로·세로 1.5센티미터로 한다.

라. 지정표시는 눈·비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서, 동판 또는 쉽게 훼손되지 않는 판으로 게시하여야 한다.